

# 2026년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공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뿌리산업의 근간인 우수 소공인을 발굴해 제품개발지원, 제조환경개선, 기술혁신(지식재산권 획득 및 시험/인증 지원), 스마트 공정 바우처 지원을 통해 인천형 강소 소공인을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21일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

## 1 사업개요

- 사업명 :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4월 ~ 11월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해당 사업장이 인천 소재로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 소공인이란?
  -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C10~C34, [붙임1] 참고)

- 지원규모 : 30개 업체

### ○ 지원제외대상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동일 점포 내 이업종 겸업 시 제조업 업태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미만인 점포
- 대표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불가
-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025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는 지원 불가(단,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이내인 자는 제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인 경우
- 지방세 체납 기업인 경우
- 2025년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수혜업체
- 2026년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 특색간판 지원 및 경영환경개선 사업 수혜업체(강소 소공인 육성지원 사업 중복 수혜 불가)
- 기타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

○ 지원내용 : 제품개발지원, 제조회장개선, 기술혁신, 스마트 공정 바우처 지원

세부지원 내용	
제품개발지원	금형 및 샘플 제작, 신제품 개발 관련 제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 등 제품 개발 지원 ※ 단, 양산용 재료비 지원 불가, 자체 설계·인건비 지원 불가
제조회장개선	작업장 조명 LED 교체, 작업장 소음방지, 환기장치 및 조명장치, 미끄럼 방지 등 작업장 환경개선, 작업대 구매 및 개선, 단순 노후 장비 교체 (비자동 설비),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소방설비 설치·개보수, 누전차단기, 안전가드 등 안전설비 설치·개보수 ※ 인테리어 공사(간판 등) 및 단순 편의시설, 사무실 내 사무용기기 등 제조업체 경영안정화와 무관한 자산 취득 목적이 다분한 항목 지원 불가 (단, 제품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성 품목은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
기술혁신	지식재산권획득 및 시험/인증 지원 ※ 특허출원비,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해외인증(CE, UL, CSA 등), 국내인증(ISO, 환경인증, 메인비즈, 이노비즈 등), 시험비용 지원
스마트 공정	자동화 설비 도입(자동이송장치, 자동포장기, 자동화 제어장치), 디지털 공정관리 시스템(IOT 센서 기반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MES·POP 시스템, 스마트 모니터링 보드), 스마트 전력 계측기, 고효율 인버터 시스템, 온습도 자동제어 등

\* 기술혁신은 반드시 [붙임2] 기술혁신 지원금액 배정 조건표의 지원금액 확인 후 작성

\* 기술혁신은 공고일 이후 현재 진행중(진행완료 불가)인 상태의 업체는 신청 및 지원금 지급가능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500만원 이내(지원금한도 내 공급가액의 90%, VAT 제외)

※ 자기부담금 : 공급가액의 10% + 지원금 초과분 + VAT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자부담
- 향후 지원사업 선정 후 사업수행 완료 증빙 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완료 보고서 등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 거래 지원불가함

## 2

##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6. 4. 21.(화) ~ 5. 12.(화), (평일 09:00~18:00)

○ 신청 및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2026. 5. 12(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접수처

우편번호	주 소
22883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140, 4층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인천신용보증재단)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담당자 앞

○ 문의처 :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상권활성화팀(032-715-5240)

○ 추진 일정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	사업수행 및 정산 확인	지원금 지급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 선정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사업수행 결과 및 사업비 정산 확인	⇒ 정산 완료 후 지원금 지급
4월 ~ 5월	5월 ~ 6월	6월 ~ 10월	~ 11월

※ 단, 추진 일정은 센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출서류(필수)	비고(발급처 등)
① 제출서류 및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제1호 서식]
②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제2호 서식]
③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3호 서식]
④ 사업 참여 동의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안내문	[제4호 서식]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b>업태 및 종목 : 제조업 업종 필수</b> <b>※ 업태에 제조업 및 도소매 등 두 가지 이상 업종 영위를 하고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 신고서(최근 1년치)로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제조업인지 확인 필수</b>
⑥ 지방세 납세 증명서	<b>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분</b> <b>※ 납세자 정보, 체납여부,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必</b> (발급처)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
⑦ 매출액 확인 서류 (과세 또는 면세에 따라 해당서류 제출)	[과세사업자] <b>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b>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확인(이용하고 있는 세무사무실)
	[면세사업자] <b>2025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사업장현황신고서 또는 최근 1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사업장현황신고서</b>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확인(이용하고 있는 세무사무실)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유무에 따라 해당서류 제출)	[직원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b>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분)</b> (발급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직원이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가 없을 경우] <b>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분)</b>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1577-1000)
⑨ 견적서	견적서에는 품명, 사양, 수량, 단가 등 구체적인 위탁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b>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b>
<b>제출서류(※ 창업초기자만 해당)</b>	<b>비고</b>
⑩ 매출액 사실 약속서	[제5호 서식]

## 4

## 심사 및 선정

### ○ 제출 서류 심사

- 1차 : 신청 자격요건(지원대상 여부 등)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 등 확인  
\* 정량평가(30점)

평가항목	배점	심사기준
업력 현황	10	사업 영위 기간
매출 기준	10	2025년 매출기준
신규 참여	10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수혜 여부

- 2차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정성평가(70점)

평가항목	배점	심사기준
계획 적정성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명확성
지원 필요성	20	지원내용과 소요비용의 적절성 및 필요성
기업 보유 역량	15	기업이 보유·추진 중인 제품·기술·역량 등의 우수성
지원 효과	15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

### ○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금 금액 확정

- 적정 모집 규모 미달 시, 모집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종 모집 종료 후 선정 평가 시행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공고 실시할 수 있음
-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한도 및 사업기간을 고려한 후 추가 선정·지원 가능
- 지원금액은 최대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되므로 견적 산출 시 금액 산정에 유의바람

### ○ 최종 선정발표 : 선정 업체별 개별 통지(2026년 5월 말 예정)

- 최종 선정업체에게는 문자로 개별통보 되오니, 신청서 상 대표자 및 실무담당자 핸드폰 번호 정확히 기재

※ 선정업체는 사업설명회 및 경영개선 교육 필수 참석(6월 4일 또는 6월 5일 중 하루 필참)

## ○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 결과보고 제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사업 선정일로부터 ~ 2026.10.30. 까지 제출)

※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 관련 제출 서류는 사업설명회 및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된 업체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

구분	제출자료 목록
필수	1.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개선 전, 후 비교 사진 필수 / 부품 구매 시, 부품 구매 사진 필수)
	2. 제작(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시공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각 시공업체 별로 사업자등록증 제출
	3. 전자세금계산서 1부 시공업체 및 용역업체(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
	4. 계좌이체 입금 확인증 - 입금자 성명 및 계좌번호, 수취인 성명 및 계좌번호, 입금금액, 이체 일자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
	5. 통장사본 각 1부 - 시공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각 시공업체 별로 사업자등록증 제출 - 소상공인이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 지출 : 대표자 또는 사업장 통장사본 - 소상공인이 자부담 부분(부가세 및 자부담 10%)만 부담 : 시공(제작)업체 통장사본
	6.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지
	7. 거래명세서
제품개발지원 추진 업체만 추가 제출	- 위탁 구매 및 개발 세부내역서 (부품 구매 또는 납품 일자, 개발일자, 제품명, 구매사유, 세부내역 등 세부적으로 기재)
제작(시공)내용 변경 시	-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별도 서식] - 수정견적서 - (변경 후 시공업체)사업자등록증
지원사업 포기 시	-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별도 서식]

## ○ 사업비 입금 및 지원금 지급

- 사업비는 대표자(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 필수(현금 지급, 카드 결제 불가)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지출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우선 확인**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센터는 필요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점검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함
- **본 사업은 선정기업이 수행업체에게 사업진행 및 사업비를 선지급**하고, 센터는 정산완료 후 선정기업에 지원금을 소공인에게 지급함(부가세 및 초과금액은 기업 부담). 단,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소공인이 총 소요비용 중 부가세 및 자부담 입금 사항이 확인**되면 수행업체 **지원금 수령 가능**
- 지원대상 업체는 2026.10.30.까지 사업종료 및 지원금신청서,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단, 상황에 따라 **사업담당자와 사전에 조율하여 기간 연장 가능**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 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요비용을 계좌이체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 결정 취소**

## 6

## 기타사항

### ○ 유의사항

- **공고문 관련서식 첫페이지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반드시 숙지**
-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센터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함**(※ 단, 본점이 인천 소재여야 함)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단, 기술혁신은 공고일 이후 현재 진행중(진행완료 불가)인 상태의 업체는 신청 및 지원금 지급가능)
- 신청서,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안전 및 환경개선과는 무관한 단순 인테리어 개선, 단순 편의시설, 사무실 내 사무용 기기 등 **제조업체 경영안정화와 무관한 항목 지원불가**(단, 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성 품목은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본 센터에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지원업체 선정 후, 지원사업 내용 변경 시 사업담당자 사전 승인 후 진행 필수
- 지원업체 선정 관련 선정심사 의견 등에 따라 지원사업 담당자가 현장점검 진행할 수 있음
- 해외출원 송금수수료의 경우, 변동되는 환율로 인해 최초 견적서상 예상 송금수수료로 지급
- 사업 접수현황, 신청자별 점수 등 평가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 지원선정 신청내용 변경 및 포기

-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 내용, 시공업체 변경 사항 발생 시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별도 서식]제출
-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별도 서식]제출 후, 변경 승인 후에 시공(제작) 작업을 시행해야 함
  - \* 신청내용 변경 시 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 시 결정된 지원금은 상향되지 않음
  - \* 신청내용 변경 시 제작비용이 감소되는 경우,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90%로 감액 변경하여 지급
  - \* 지원포기의 경우 지원사업 포기신청서[별도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 외주업체(시공, 제작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지원사업 선정업체 중 본인(소공인)이 직접 자체 시공(제작)하는 경우 지원불가 (선정취소)
- 신청인은 용역업체(공급업체) 추진 시, 신청서 내 추진 내용과 유사한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로 선정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조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외주업체 참여 시 시공업체는 최대 3개(신청업체)로 참여를 한정함

붙임 1.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1부

붙임 2. 기술혁신 지원금액 배정 조건표 1부.

대분류	분류코드	중분류	매출액 기준	상시근로자
제조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0억 이하	10인 미만
	C24	1차 금속 제조업		
	C10	식료품 제조업	120억 이하	
	C11	음료 제조업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12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C33	기타 제품 제조업 ※ 3304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은 제외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5억원 이하		

기술혁신 부문 지원금액 배정 조건표			
지식재산권	특허출원	해외 출원(PCT 국내단계 진입 포함)	건당 400만원 범위내 실비지원
		국내 출원 * 관납료 지원 불가, 대리인수수료 가능	건당 150만원 범위내 실비지원
	실용신안등록출원 * 관납료 지원 불가, 대리인수수료 가능		건당 100만원 범위내 실비지원
	상표등록출원 * 관납료 지원 불가, 대리인수수료 가능		건당 25만원 범위내 실비지원
	디자인등록출원 * 관납료 지원 불가, 대리인수수료 가능		건당 35만원 범위내 실비지원
시험/인증	해외인증(CE, UL, CSA 등)		최대 300만원 범위내 실비지원
	품질인증 (KS(제품), KS(서비스), KC, Q마크, K마크 등)		최대 200만원 범위내 실비지원
	조달/기술인증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성능인증)		최대 200만원 범위내 실비지원
	환경인증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인증(저탄소), 녹색인증, GR인증)		최대 200만원 범위내 실비지원
	시스템(ISO) * 인증획득 및 컨설팅 포함		최대 150만원 범위내 실비지원 (단, 복수 인증 시 최대 200만원)
	메인비즈 * 인증획득 및 컨설팅 포함		최대 100만원 범위내 실비지원
	이노비즈 * 인증획득 및 컨설팅 포함		최대 200만원 범위내 실비지원
	뿌리기업, 소재부품		최대 100만원 범위내 실비지원
	기타 국내인증		최대 100만원 범위내 실비지원
	시험비용 지원 ** 한국인증기구(KOLAS) 인증기관 등 참여기업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기관		최대 200만원 범위내 실비지원

※ 기술혁신의 경우 공급가액 90%까지 지원금액 배정 조건표 최대 금액 범위 내 지급